

#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## 1. 행정규칙명

-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3-7호, '23.2.1.)

## 2. 개정사유

-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,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
- 선박용품·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, 국제무역선(기)에 적재되어 설치·사용되는 물품의 적재등록 방법 등 신설
- 관세법,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(Incoterms) 개정 사항 반영
- 고시 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신고필증 서식(하단 안내문) 수정

## 3. 주요 개정내용

### ①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

- 별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\*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(제32조 제1항 제4호)

\*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적용 대상인 HS 제7204호 제외

### ②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

- 선박·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\*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(제48조 제4항)  
\* B/L 등 운송서류 미발행 → 적재화물목록 작성·제출 불가
- 세관장이 인정하는 '긴급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'의 적재허가, 수출신고,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(제48조 제5항 및 제6항)
-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(날인) 신규 제작 (별표8)

### ③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

-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5)-㉔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 (별표)

### ④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, 행정규칙 개정(폐지) 사항 등 반영

- 「관세법」 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(1일→10일) 개정 ('20.12.22신설)사항\* 반영 (제27조 제2항)  
- 수출신고 취하 승인(신청)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/적재기간 승인(신청)서 서식(별지 제2호서식)과 분리 (별지 제2호의2서식)  
※ (별지 제2호서식) : 수출신고 정정/적재기간연장 승인(신청)서 (1일)  
(별지 제2호의2서식) : 수출신고 취하 승인(신청)서 (10일)
- 기획재정부훈령 「세관특수청인에관한규정」 폐지('05.08.18) 반영 (제22조 제1항)
- 비공개 훈령\* 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  
\*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

#### 5.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

-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
  -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 (portal.customs.go.kr → [unipass.customs.go.kr]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)) 사항 반영
    - (1)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관세법 제251조, 제277조)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초소,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  - (2)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
- (※ 반송신고서 표출)
- (1)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(관세법 제263조) 또한,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초소,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- (2)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

#### 4.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#### 5. 시행(예정)일자 : 2024년 2월 23일

#### 6. 의견제출 방법

- 제 출 처 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

#### ○ 담 당 자

- 통관물류정책과 민경욱 사무관(☎042-481-7825)  
남기오 주무관(☎042-481-7802)

#### ○ 제출기한 : 2024. 2. 15(목요일)

#### ○ 제출방법 : 이메일(namgo8520@korea.kr), 팩스(042-481-7819)